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

2021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대상자: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(졸업가능자만 제출)
⇒ **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** 확인 필수
(확인방법: 종합정보시스템-수업업무-교직업무-교직사정안내)
- 접수기간: 2022. 6. 3.(금) ~ 6. 24.(금)
- 접수방법: **종합정보시스템** → **수업업무** → **교직업무** → **무시험검정원서 출력 후 본인 날인**
-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: 2022. 6. 24.(금) 17시까지 소속학과(전공) 사무실
가. **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(반드시 본인 서명하여 제출)**
나.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
 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**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1부** [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] 참조
 - 성범죄경력조회**: 무시험검정원서 하단 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’ 동의/서명하여 제출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다. 영양사면허증 사본(원본 대조필,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) 1부.
- 기타 안내
가. 인적사항 정정 관련 안내
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)과 실제 인적사항이 상이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 -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: 주민등록등본 1부
 - 주민등록번호 정정: 주민등록초본 1부
- 유의사항
가. 교직 복수 중이라도 원서는 주전공에만 제출합니다.
나. 기존에 서류를 제출했던 학생(현재 졸업연기중인자 등)도 반드시 다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.
⇒ 2022. 2월 ‘**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(진단서)**’를 제출한 학생은 **재사용 가능함(학사지원팀(850-5133) 개별 문의)**
⇒ ‘7호기준’ 대상자(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) 포함
다. 졸업연기예정자, 초과학기희망자(졸업학점 부족)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★ 졸업(교직)학점 부족한 학생은 **여름계절수업 가능 여부 문의(850-5122)**
라.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.
⇒ 단, <교직 포기원>을 반드시 제출(사범대 행정실(850-5126))
마. 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나 교직 필수과목/학점 미이수자는 반드시 졸업논문/시험 이수 후 졸업연기신청 해야 합니다.
★ 졸업논문/시험을 미이수하여 수료자가 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함.
바. 식품영양학과의 경우, 영양사면허증 취득 후 발급 가능합니다.

◎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안내

- * 대상자: 2021. 6. 23.이후의 무시험검정 대상자부터 적용
- * 내용: 초·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[교사자격취득 기준 결격사유]에 대한 내용이 신설(아래 법령 참고)되어 안내하오니 서류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신설 조문>

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(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의2,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내용 동일)
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
[시행일: 2021. 6. 23.]

[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관련 안내]

- 제출서류: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**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**
 ⇒ 진단서에 반드시 대마·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.
 ⇒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‘양성’반응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판단하는 의사의 소견을 검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되어야 함
- 서류 유효기간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
 ⇒ (예시)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‘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, ‘22년 1월~’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·발급된 검진결과 인정 가능함
- 검진종류(방법)
 - ‘**TBPE검사**’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간이 검사(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)
 - 위 법령에 따른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, 일반적인 요검사가 아닌 **약품소변검사(TBPE)임** ※ **종합건강검진 아님 주의**
- 검진 기관 및 비용(선택 사항)

[권장] - 검진 기관 : 한국건강관리협회(전국)_붙임 파일 참고
 - 검사 비용: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,000원 / 단독검사시 6,000원

- 검진 기관 : **일반의료기관**(가정의학과, 정신의학과, 내과, 의원 등)
 - 검사 비용: 7,000원 ~25,000원

- 국가건강검진(격년 실시)시 해당검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, 미실시자는 단독 검사로 진행
- 진단서로 발급시 추가비용(1만원) 발생함
- 방문 시 신분증 지참
-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(진단서)발급 소요기간: 2~3일 방문 전 사전 확인 및 예약 필요
- ※ **건강검진(약품소변검사)진단서는 검사 비용이 발생하므로, 반드시 교직사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(상세문의는 교무학사부 053-850-5133)**

- 붙임 1. 교육부 안내자료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) 1부.
- 2. 교육부 안내자료(리플렛) 1부. 끝.

2022. 6.
교 무 처 장